

● 제324회 ●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1819)

2024. 6. 14.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1819

I.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가. 제안자 : 서울특별시장

나. 제안일 : 2024. 5. 27.

다. 회부일 : 2024. 5. 30.

2.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및 특징

가. 세입예산

- 시민건강국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2216억 6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4억 900만원(4.9%)이 증액되었음.
- 세입 증액의 주요 원인은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 국고보조금 교부액 변경에 따라 81억 4000만원이 증가(5.9%)하였으며, 공공보건의료재단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 반환으로 22억 8700만원(8.0%) 등이 증액되었음.

〈표〉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 규모

(단위 : 백만원,%)

구분	2023예산	2024년도		증감(비율)
		추경예산	기정예산	
합 계	248,567	221,664	211,256	10,409(4.9)
세외 수입	경상적	37,648	40,991	-
	임시적	27,445	30,890	2,287(8.0)
	행정제재부과금	6	5	-
지방교부세	200	-	-	-
국고보조금 등	161,016	146,906	138,766	8,140(5.9)
지방채	-	-	-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2,253	2,872	2,890	△18(△0.6)

나. 세출예산 총괄

- 시민건강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7065억 2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43억 300만원(11.8%)이 증가하였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표〉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분	2023예산	2024년도		증감(비율)
		추경예산	기정예산	
합 계	649,467	706,522	632,219	74,303(11.8)
행정운영경비	9,364	10,108	10,110	△2(△0.1)
재무활동	3,038	17,656	160	17,496(10,935)
사업비	637,065	678,758	621,949	56,809(9.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0조(추가경정예산)

II.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주병준)

1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사유

- 서울특별시는 이번 추경안에 대하여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 현상 장기화로 인한 서민 경제의 부담을 덜고 위기가 더욱 힘겹게 다가올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위한 편성¹⁾이라고 밝힘.
- 2024년 서울특별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조 5110억원 규모로 기정예산 45조 7881억원 대비 3.3%가 증가함.
- 2024년도 제1회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6322억 1900만원 대비 743억 300만원 증액한 7065억 2200만원으로 편성하여 제출함.
-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은 이번 추경안의 편성배경에 대하여 ① 의료공백 장기화에 따른 시립병원 긴급지원, ② 저출생 대응, ③ 손목닥터 9988 참여자 확대 등 시정 현안 추진을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이번 추경안에 증액사업은 46건 871억 1600만원, 감액사업은 9건 △ 128억 1300만원임.

1)자료: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과, 2024.05.27., “서울시 올해 첫 추경 1조 5,110억원 편성… 민생경제 회복·취약계층 지원 전력”, 서울시 보도자료

2 세입 및 세출 총괄

1) 세입예산 총괄

-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 예산액은 2216억 6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4억 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세입 증액의 주요 원인은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 국고보조금 교부액 변경에 따라 81억 4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공공보건의료재단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 반환으로 22억 8700만원 등이 증액되었음.

〈표〉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 규모

(단위 : 백만원,%)

구분	2023예산	2024년도		증감(비율)
		추경예산	기정예산	
합 계	248,567	221,664	211,256	10,409(4.9)
세외 수입	경상적	37,648	40,991	-
	임시적	27,445	30,890	2,287(8.0)
	행정제재부과금	6	5	5
지방교부세	200	-	-	-
국고보조금 등	161,016	146,906	138,766	8,140(5.9)
지방채	-	-	-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2,253	2,872	2,890	△18(△0.6)

2) 세출

가) 세출예산 총괄

-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7065억 2200만원으로 기정예산 6322억 1900만원 대비 743억 300만원(11.8%) 증가하였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표〉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분	2023예산	2024년도		증감(비율)
		추경예산	기정예산	
합 계	649,467	706,522	632,219	74,303(11.8)
행정운영경비	9,364	10,108	10,110	△2(△0.1)
재무활동	3,038	17,656	160	17,496(10,935)
사업비	637,065	678,758	621,949	56,809(9.1)

나) 부서별 세출예산

-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소관 부서별 추경 편성액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공공의료추진단 6건(320억 1200만원), 스마트건강과 11건(227억 6600만원), 감염병관리과 7건(161억 9700만원), 보건의료정책과 8건(57억 1900만원), 정신건강과 9건(10억 1100만원), 감염병연구센터 1건(2억 6500만원), 식품정책과 1건(1억 5500만원) 순으로 추경 금액이 높았음.
- 그 외 사업소별 추경 편성액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보건환경연구원 6건(6억 3700만원), 서북병원 3건(5800만원) 순으로 추경금액이 높았으며, 은평병원은 3건(△45억 16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음.

〈표〉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안 부서별 추경(안)

(단위 : 백만원, %)

구분	기정예산 (A)	추경내역 (B)	추경 예산(안) (C=A+B)	증감률 (B/A)	건수
계	632,219	74,303	706,522	11.8%	55
보건의료정책과	84,231	5,719	89,950	6.8%	8
스마트건강과	121,736	22,766	144,502	18.7%	11
정신건강과	123,067	1,011	124,078	0.8%	9
감염병관리과	130,220	16,197	146,417	12.4%	7
식품정책과	18,440	155	18,595	0.8%	1
감염병연구센터	1,196	265	1,461	22.2%	1
공공의료추진단	89,111	32,012	121,123	35.9%	6
보건환경연구원	23,547	637	24,184	2.7%	6
은평병원	12,926	△4,516	8,410	△34.9%	3
서북병원	16,718	58	16,776	0.3%	3

다) 편성목적별 세출예산

-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을 기정예산 대비 743억 300만원(11.8%) 증액편성하여 7065억 2200만원으로 제출하였는데, 편성목적별 주요 내용을 보면, ① 저출생 대응 임신부의 건강한 출산 및 산전·사후관리 지원(90억원), ② 손목닥터 9988 상시모집에 따른 참여자 확대(113억원), ③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른 시립병원 경영회복자금 지원(338억원) 등 주요 현안은 크게 3가지로 구분이 됨.

〈표〉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안 편성 주요 내용

(단위 : 억원)

구분	주요내용	규모
저출생, 병원 경영지원 등 시정현안 추진 (542억원)	저출생 대응 임신부 산전·산후관리 지원	90.5
	손목다터 9988 상시모집 전환에 따른 참여자 확대	113.1
	시립병원 경영회복자금 지원	338.4
계획변경 등에 따른 감액편성 (△104억)	서남병원 증축, 은평병원 시설현대화 설계기한 연장에 따른 감액	△99.3
	기타 계획 변경 등에 따른 감액	△4.7
국비사업 확정(변경)내시 반영 (123억)	국고 보조사업 교부액 변경에 따른 국비 및 매칭시비 반영	123.2
그 외 신규사업 및 사업확대 등 (182억원)	탈시설 정신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2.3
	지난연도 국고보조금 반환금 편성	175.0
	기타	4.7

라) 세부사업별 세출예산

-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세출예산 추경안을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총 55개 사업이 편성되었으며, 이 가운데 증액사업은 총 46건(871억 1600만원), 감액사업은 총 9건 △128억 1300만원이며 그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표〉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소관 2024년 제1회 추경안 세부 내역

(단위: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기정예산 (A)	추경내역 (B)	추경예산(안) (C=A+B)	추경사유 및 산출내역
총계					
보건의료정책과		(x14,711) 84,232	(x3,978) 5,719	(x18,689) 89,950	
1	응급의료기관 지원	(x4,115) 5,092	(x2,353) 2,148	(x6,468) 7,240	•(국비내시) 응급의료기관 지원보조금 증액 등 국비내시 반영
2	재난거점병원 운영 지원(국비)	(x231) 462	(x5) 10	(x236) 472	•(국비내시) 재난거점병원 운영지원 비용 증액 등 국비내시 반영
3	소아의료체계 구축(국비)	-	(x835) 1,670	(x835) 1,670	•(국비내시)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지원을 위한 국비내시 반영
4	외근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x783) 1,566	(x273) 546	(x1,056) 2,112	•의료 소외계층 입원 및 수술비 지원비용 증액 등 국비내시 반영
5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지원	-	(x143) 215	(x143) 215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비용 지원을 위한 국비내시 반영
6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x130) 260	(x368) 736	(x498) 996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비 증액 등 국비내시 반영
7	기본경비	332	△2	330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에 따른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조정
8	국고보조금 반환	-	396	396	•국고보조금 반환(20개 사업)
스마트건강과		(x18,980) 121,736	(x1,261) 22,766	(x20,240) 144,502	
9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1,289	△300	989	•보건복지부 주관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기존 추진중인 서울시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중단
10	장애인 건강보건 전달체계 구축(국비)	(x1,474) 2,313	(x8) 16	(x1,482) 2,329	•(국비내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비용 증액 등 내시반영
11	서울형 헬스케어 운영	13,777	11,306	25,083	•참여자 수 확대에 따른 인센티브 예산 확대 편성
12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전환사업)	25,223	897	26,120	•이용자 수 증가 추세에 따라 건강관리 지원예산 부족 예산분 반영

연번	세부사업명	기정예산 (A)	추경내역 (B)	추경예산(안) (C=A+B)	추경사유 및 산출내역
13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x3,264) 7,072	(x327) 709	(x3,591) 7,781	•(국비내시) 영아 대상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비용 증액 등 국비내시 반영
14	생애 초기 건강관리 사업	(x268) 402	(x38) 38	(x306) 440	•(국비내시) 차치구 신규 공모선정에 따른 국비 내시반영
15	난임·우울증상상담센터 설치운영	(x119) 338	(x119) 273	(x238) 611	•(국비내시) 서남권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공모 선정에 따른 국비내시 반영
16	35세 이상 임신부 의료비 지원사업	-	8,047	8,047	•고령 임신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의료비 지원
17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	102	102	•저출생 문제 적극 대응을 위해 임신·출산 희망 가정의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18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x2,412) 5,225	(x769) 1,667	(x3,181) 6,892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비용 증액 등 국비내시 반영
19	국고보조금 반환	10,256	13,267	23,523	•국고보조금 반환(2개 사업)
정신건강과		(x35,967) 123,067	(x445) 1,011	(x36,411) 124,078	
20	정신요양시설 운영보조(국비)	(x4,177) 8,786	(x43) 86	(x4,220) 8,872	•(국비내시) 정신요양시설 운영비용 증액 등 국비내시 반영
21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인 지원	(x81) 122	(x20) 29	(x101) 151	•(국비내시)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인 지원비용 증액 등 국비내시 반영
22	정신건강증진시설 기능보강	(x1,162) 2,325	(x△1,050) △2,100	(x113) 225	•(국비내시) 정신건강증진시설 기능보강 예산 축소 등 국비내시 반영
23	정신건강증진시설 인력확충	(x2,574) 4,299	(x259) 389	(x2,833) 4,687	•(국비내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인건비 증액 등 국비내시 반영
24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x2,629) 4,277	(x236) 235	(x2,865) 4,511	•(국비내시) 정신응급병상 운영비용 증액 등 국비내시 반영
25	강제입원 절차보조인 지원	(x150) 300	(x△150) △300	-	•2024년 보건복지부 사업 종료 통보 등 국비내시 반영
26	탈시설 정신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	225	225	•탈시설 정신장애인 초기 자립정착금 지원
27	마음투자 지원사업	(x4,659) 6,988	(x1,087) 1,630	(x5,745) 8,618	•정신건강고위험군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비용 증액 등 국비내시 반영
28	국고보조금 반환	-	817	817	•국고보조금 반환(17개 사업)

연번	세부사업명	기정예산 (A)	추경내역 (B)	추경예산(안) (C=A+B)	추경사유 및 산출내역
	감염병관리과	(x56,293) 130,220	(x838) 16,197	(x57,131) 146,417	
29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 사업	(x123) 123	(x△13) △13	(x110) 110	•(국비내시)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 운영비 감액 등 국비내시 반영
30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x66) 132	(x23) 46	(x89) 178	•(국비내시) 인플루엔자 표본감시비용 증액 등 국비내시 반영
31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대응 인력지원	288	△168	120	•코로나19 이상반응 대응 기간제 의료인력 인건비 감액 (내부인력 활용)
32	결핵 관리-보건소 결핵관리(국비)	(x2,760) 4,714	(x178) 298	(x2,938) 5,012	•(국비내시) 결핵관리전담인력 인건비 증액 등 국비내시 반영
33	결핵 관리-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	(x2,412) 2,412	(x490) 490	(x2,902) 2,902	•(국비내시) 결핵관리전담인력 인건비 증액 등 국비내시 반영
34	결핵진단검사 지원	-	(x160) 266	(x160) 266	•(국비내시) 결핵환자 진단검사비 증액 등 국비내시 반영
35	국고보조금 반환	1	15,278	15,279	•국고보조금 반환(14개 사업)
	식품정책과	(x6,655) 18,440	155	(x6,655) 18,595	
36	국고보조금 반환	-	155	155	•국고보조금 반환(7개 사업)
	감염병연구센터	(x305) 1,196	265	(x305) 1,461	
37	국고보조금 반환	-	265	265	•국고보조금 반환(3개 사업)
	공공의료추진단	(x4,050) 89,111	(x1,600) 32,012	(x5,650) 121,123	
38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운영보조	16,284	22,642	38,926	•의료공백 장기화에 따른 현금유동성 위기 해소를 위한 긴급자금 지원
39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위탁운영	13,910	11,200	25,110	•의료공백 장기화에 따른 현금유동성 위기 해소를 위한 긴급자금 지원
40	서남병원 증축 및 기능개선	5,400	△5,400	-	•설계기간 연장에 따른 공사비 감추경
41	공공병원 경영혁신 지원	-	(x1,600) 3,200	(x1,600) 3,200	•(국비내시) 서울의료원 혁신전략계획 A등급 평가에 따른 지원금 반영 등 국비내시 반영
42	기본경비	40	△3	37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에 따른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조정

연번	세부사업명	기정예산 (A)	추경내역 (B)	추경예산(안) (C=A+B)	추경사유 및 산출내역
43	국고보조금 반환	-	373	373	• 국고보조금 반환(8개 사업)
보건환경연구원		(x1,614) 23,547	637	(x1,614) 24,184	
44	식품 안전성 검사(자체)	536	17	553	• 기간제 채용 사전심사 결과 반영에 따른 감액 및 해외온라인 쇼핑 플랫폼 판매 제품 안전성 검사 확대
45	의약품 안전성 검사(자체)	272	26	298	• 해외 온라인 쇼핑 플랫폼 판매 화장품 안전성 검사 확대
46	수질·토양 오염물질 검사	1,179	132	1,311	• 노후된 수질 오염물질 검사장비 교체
47	청사시설 유지관리	3,952	213	4,165	• 강남농수산물검사소 강서지소 이전에 따른 기존 입차시설 원상복구
48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128	50	178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대기환경측정소 시설 개선
49	국고보조금 반환	-	199	199	• 국고보조금 반환(25개 사업)
은평병원		12,926	△4,516	8,410	
50	은평병원 의료 및 행정장비 확충	121	9	130	• 치과 멸균장비 등 노후화한 장비 교체
51	은평병원 현대화 사업 (리모델링) 추진	6,145	△4,527	1,618	• 마약관리센터 조성 등으로 설계기간 연장에 따른 공사비 감액
52	기본경비	1,459	2	1,461	•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에 따른 직책급업무수행경비 반영
서북병원		(x192) 16,718	(x19) 58	(x210) 16,776	
53	서북병원 공공의료서비스 수준 관리	3,999	13	4,012	• 서북병원 방수공사 감리비용 반영
54	서북병원 고객중심 간호서비스 제공	103	8	111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과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수령액을 간호인력 처우 개선 비용으로 활용
55	서북병원 결핵관리사업(국비)	(x119) 238	(x19) 38	(x138) 275	• (국비내시) 결핵전담 간호사 인건비 증액 등 국비내시 반영

3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1. 서울형 헬스케어 운영 사업 분석 <사업별설명서 p.824>

가. 현황

- 서울형 헬스케어 운영은 스마트 워치와 손목닥터 9988 앱을 활용하여 참여자의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하고 참여도에 따라 보상을 제공하는 비대면 건강관리 사업임.

< 서울시 손목닥터 9988 사업 참여자 모집 홍보 포스터 >

**내 걸음이 돈이 돼
내 건강에 도움 돼**

워치 없이도
폰 하나로!

100,000 포인트
8,000 보너스
식단 2,150 kcal

신청 기간 2024.3.4(월)~ * 상시 모집
신청 대상 19세 이상 서울시민 누구나 (서울 소재 직장인 및 대학생 포함)
신청 방법 손목닥터9988 앱 또는 홈페이지
이용 안내 ① 최대 10만 포인트 제공 (건강용품, 헬스장, 편의점 등 현금처럼 사용 가능)
② 별도 워치 없이도 스마트폰 하나로 건강 서비스 이용
* 개인 워치(갤럭시,애플) 또는 스마트폰 단독 이용 등 자유 선택
* 워치는 어르신, 고독사 위험가구, 은둔고립청년 등 한정 지원(24년 8월부터)
③ 걷기·달리기 등 운동, 식단·마을건강 등 건강관리 프로그램 제공
문의 1811-9988

가정하기

SEUL M SOUL

손목닥터 9988

- 서울시는 24년 3월부터 19세 이상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① 연령 상한(75세) 폐지, ② 연중 상시 모집 전환, ③ 스마트폰만 있으면 참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함.
- 이처럼 더 많은 시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손목닥터 9988’ 시스템을 개편하자 당초 올해 목표한 신규참여자 수(25만명)를 초과하여 24년 6월 기준 53만명 모집을 달성하였고, 연말까지 총 누적 참여자 수가 153만명(신규 108만명, 기존 참여자 45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됨.

이에, 따라 서울시는 초과된 신규참여자의 ‘인센티브 제공 예산’ 확보를 위해, 서울형 헬스케어 운영 사업에 기타보상금으로 113억원을 편성하여 제출함.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 서울형 헬스케어 운영 제출 현황>

(단위: 천원)

사업명	구분	추경예산(안) (A+B)	기정예산 (A)	증 감 (B)	추가경정예산 내역
서울형 헬스케어 운영	계	25,083,000	13,777,500	11,305,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년 사업 목표 변경(신규참여자 수 25만 → 60만)에 따라 상시모집 체계로 전환 - 연내 사업 목표 초과 달성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24년 말 누적 153만) 추가 신규참여자 인센티브 제공 예산 필요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000	1,000	0	
	사무관리비	1,618,000	1,618,000	0	
	기타보상금	23,184,000	11,878,500	11,305,500	
	공기관등에 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280,000	280,000	0	

나. 분석의견

첫째, 손목닥터 9988 사업은 참여자가 매년 늘어날수록 투입되는 포인트 지급 예산도 크게 증가하는 구조임.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불필요한 포인트 지급액 규모를 조정하여, 동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손목닥터 9988 사업은 시비 100%로 운영되며, 아래와 같이 참여자가 매년 늘어날수록('21년 5만명 → '24년 153만명) 투입되는 포인트 지급 예산('21년 15억원 → '24년 232억원(본예산+추경))도 크게 증가하는 구조임.

<손목닥터 9988 연차별 모집인원 및 예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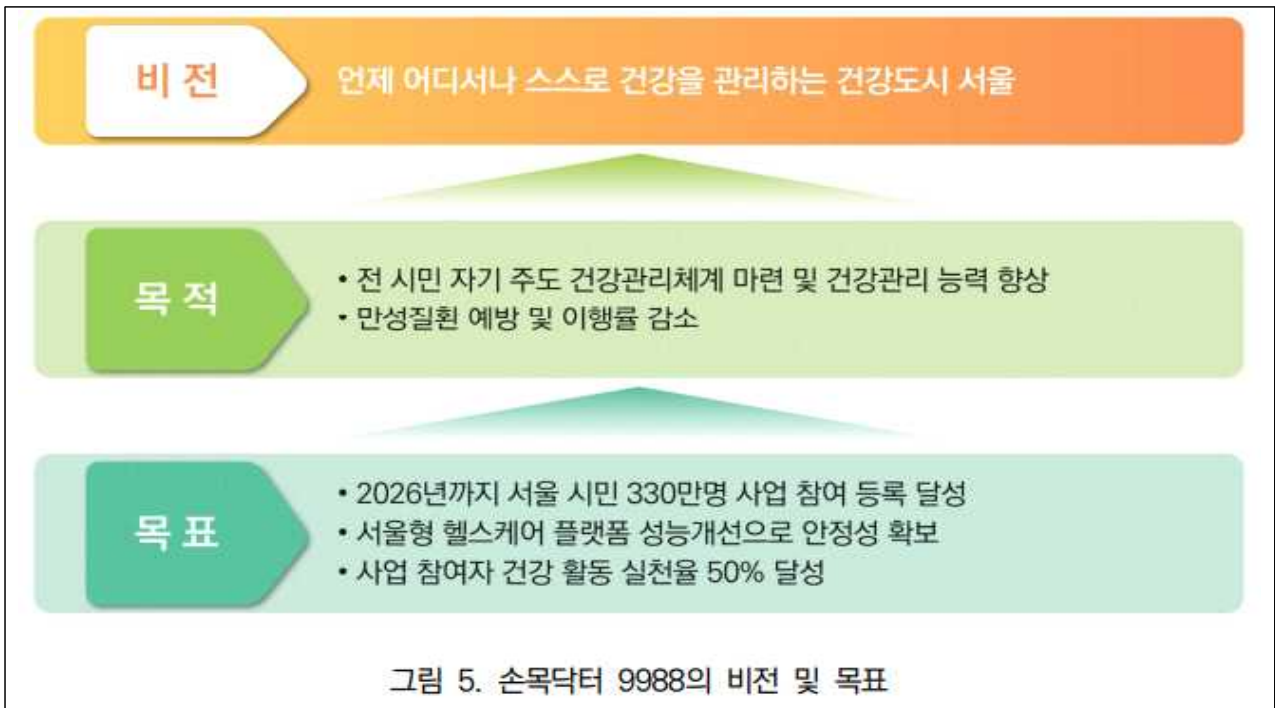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구분	'21년(1차)	'22년(2차)	'23년(3차)	'24년	추경요청	합 계(누적)	
모집 대상	19~64세	19~69세	19~75세	19세 이상	19세 이상	-	
신규 모집 목표 (누적)	5만명	18만명 (23만명)	22만명 (45만명)	*(당초 목표) 25만명 (60만명) ↓ '(24.6월 현재) 53만명 (98만명)	'(24.12월 말) 108만명 (153만명)	153만명	
보급위치	5만명	13만명	15만명	5만명	-	38만명	
자가위치	-	5만명	6만명	55만명	48만명	115만명	
휴대폰	-	-	1만명				
예산 (시비 100%)	총 예산	4,475	12,855	27,018	18,198	11,305	73,851
	(포인트)	1,500	1,000	14,000	11,879*	11,305	39,684
	(위 치)	2,500	6,500	7,500	2,500	-	19,000
	(시스템)	-	2,883	2,447	1,920	-	7,250
	(상담센터)	375	1,802	2,349	1,423	-	5,949
(홍보 등)	100	670	721	476			1,967

* '24년 본예산 편성(포인트 118억 7900만원) 당시 신규 참여자 모집 목표를 25만명으로 계획하였으나 이를 초과 달성(24년 6월 기준 53만명)하였고, 연말까지 누적 참여자 수가 153만명(신규 108만명, 기존 참여자 45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됨.

- 서울시의 손목닥터 9988 ‘3차 연도 사업 안내서’에 따르면, 서울시는 현재 100만 수준인 가입자를 2026년까지 330만명으로 약 3배 이상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음.

< 손목닥터 9988 3차 연도 사업 안내서²⁾ >



- 이처럼 서울시의 연차별 가입자 규모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추세인 만큼³⁾, 손목닥터 9988 사업의 재정 소요도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현 단계에서는 동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2) 자료: 서울특별시·공공보건의료재단(2023.8.) 손목닥터9988 3차 연도 사업 안내서, p10.

3) 자료: 최윤선, 2024.01.19., “오세훈 "손목닥터 9988 가입자 100만 목표…시민건강 플랫폼”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40119081600004>

- (신규 참여자 인센티브) 우선, ‘보상’은 “참여자의 내적 동기에 영향을 주고 참여자의 건강행태를 개선하며, 지속적인 참여 유도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데⁴⁾,

주로 건강증진사업에서 ‘보상’은 ① 참여 기반 보상(건강증진 프로그램 참여 자체로 보상), ② 활동 기반 보상(정해진 행동 수행 또는 해당 프로그램 완료 시 보상), ③, 성과 기반 보상(특정한 목표치, 건강상태 설정 및 달성 시에만 보상)으로 구분됨.

< 손목닥터 9988 일반 포인트⁵⁾ >



- 현재 손목닥터 9988 사업에서도 서울시민의 건강관리 및 건강행태 개선을 위한 노력에 ‘9988 포인트’라는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자기 주도적 건강증진 활동에 지속적 참여를 유인하고 있음 (다음 페이지 참조).

4) 자료: 서울특별시·공공보건의료재단(2023.8.) 손목닥터9988 3차 연도 사업 안내서, p49.

5) 자료: 서울특별시·공공보건의료재단(2023.8.) 손목닥터9988 3차 연도 사업 안내서, p50.

< 손목닥터 9988 포인트 적립 방법 세부 사항 >

구분	세부항목	부여 포인트	최대 횟수	최대 포인트		
참여 (8,300P)	건강정보 수집 동의	1,000P/회	1회	1,000P		
	스마트 워치-스마트 폰 연동	1,000P/회	1회	1,000P		
	건강관리 목표 설정	1,000P/회	1회	1,000P		
	실천목표 설정	1,000P/회	1회	1,000P		
	손목닥터 9988 앱 출석체크	10P/일	180일	1,800P		
	사전 설문조사 참여	1,000P/회	2회	2,000P		
	푸시(Push) 알림 기능 활성화	500P/회	1회	500P		
활동 (88,200P)	식단 기록	① 1일 2회 이상 식단 기록	50P/일	180일	14,700P	
		② 주 3일 이상 1일 2회 이상의 식단 기록	150P/회	26회		
		③ 매 4주 ②를 지속 실천	300P/회	6회		
	신체 활동	① 1일 8,000보 이상 걷기(또는 200kcal* 이상 소모)	200P/일	180일	53,800P	
		② 주 3일 이상 ①을 지속 실천	500P/회	26회		
		③ 매 4주 ②를 지속 실천	800P/회	6회		
	생활 습관	홈트레이닝	① 자세검사 완료	600P/회	1회	5,400P
			② 도전운동 1회 완료	200P/회	24회	
		마음건강	마음건강 콘텐츠 청취 1회 완료	30P/회	180회	5,400P
	실천 목표	건강관리 목표 측정결과 입력		100P/주	26회	2,600P
		① 1일 1개 이상 실천목표 달성	① 1일 1개 이상 실천목표 달성	10P/일	180일	3,700P
② 주 3일 이상 ① 지속 달성			50P/회	26회		
③ 매 4주 ②를 지속 달성			100P/회	6회		
건강 카드(건강 콘텐츠) 학습		100P/회	26회	2,600P		
성과 (3,500P)	사후 설문조사 참여		2,000P/회	1회	2,000P	
	건강목표 달성		1,500P/회	1회	1,500P	
최대 적립 가능 포인트(1P=1원)				100,000P		

* 위치의 운동모드를 이용하여 걷기 외의 신체활동으로 1일 200Kcal 이상의 열량을 소비한 경우

- 구체적으로 신규 참여자는 위와 같이 ① 서비스 참여, ② 활동, ③ 성과에 따라 최대 10만 포인트(10만원)를 적립할 수 있음.
- (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방안) 서울시는 현 단계에서 9988 포인트에 대한 ‘세부항목’별 필요성과 효과성을 검증하여6) 포인트 지급액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6) 자료 : 서울특별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회의록(2024년 2월 26일(월))

- 위원 : 그리고 또 하나는 포인트 지급 같은 경우에도 정말 웃긴 게 카드뉴스 퀴즈 혹시 해 보셨습니까? 해 보셨어요? 어떠셨어요? 도움이 됩니까?
- 시민건강국 내용 좀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 내용뿐만 아니라요 카드뉴스 퀴즈가 카드뉴스를 죽죽 읽어보고 마지막 페이지에서 퀴즈의 정답을 맞히면 포인트가 지급되는 겁니다, 100포인트씩. 그런데 첫 번째 눌렀을 때 땡 틀렸어요. 맞았어요. 그러면 포인트 지급 바로 100포인트 돼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 그냥 포인트 지급을 위한 지급 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 시민건강국 카드뉴스를 보라는 취지로 사실 한 건데요.
-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거를 안 보고 틀리고 틀리고 틀리고 그냥 마지막에 정답 맞추면 100포인트가 나오잖아요. 그걸 왜 해요, 이 사업? 그렇지요? 이거 시민들 세금이잖아요, 다 포인트가.그렇지요?

- (신체활동 포인트 53,800P) 구체적으로 현재 참여자가 적립 가능한 포인트 '세부항목' 중에 신체활동 포인트는 참여자가 ① 1일 8,000보 이상을 걷거나, ② 1일 200Kcal 이상 소비한 경우 하루 200포인트(200원)가 적립되는 구조임.

따라서, 이러한 신체활동 포인트는 정해진 하루 활동 완료 시 제공하는 보상이라는 점에서, 실제 시민의 건강행태를 개선하고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수단으로 이용된다고 판단되며, 관련 예산 필요성도 인정됨.

- (그 외 활동 포인트 26,400P) 그러나 그 외 단순한 식단기록 (14,700P)⁷⁾, 마음건강(5,400P)⁸⁾ 콘텐츠 시청, 실천목표 (3,700P)⁹⁾ 달성 입력, 건강 카드 학습(2,600P) 등에 따라 지급하고 있는 포인트의 경우,

참여자의 생활 습관 개선·유지 또는 건강행태 개선에 실제 얼마나 유의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지 검증이 필요함. 이를 통해 현 단계에서는 불필요한 포인트 지급액 규모를 조정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7) 식단 기록(참여 기간 내 최대 14,700P)

(일간) 1일 2회 이상 식단기록(참여 기간 내 회당 50P, 최대 적립 횟수 180회)

: 참여자가 손목닥터 9988 앱을 이용해 본인의 식단을 1일 2회 이상 입력하면 일당 50P가 적립된다

8) 스타트업: 마음건강(참여 기간 내 최대 5,400P)

- 손목닥터 9988 마음건강 프로그램 내 오디오 콘텐츠 1개를 끝까지 청취했을 경우, 회당 30P, 1일 최대 2회 지급된다.

9) 건강생활습관 실천목표 달성(참여 기간 내 최대 3,700P가 넘지 않도록 한다.)

(1) (일간) 1일 1개 이상 실천목표 달성(참여 기간 내 회당 10P, 최대 적립 횟수 180회)

: 스스로 설정한 건강생활습관 실천목표 달성 여부를 “예” 로 체크할 경우 회당 10P 적립된다.

예시) 나는 매일 밤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들겠다. → “예” 로 체크할 경우 회당 10P 적립된다.

둘째, 손목닥터 9988 사업은 최종 목표가 서울 시민 330만명 ‘모집’이 아니라 스마트 워치와 9988 앱을 통해 시민의 건강을 ‘개선’ 시키는 것이므로, 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이를 홍보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그간 손목닥터 9988 사업에 대한 ‘효과성’과 ‘비용-편익’ 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제시한 바 있음¹⁰⁾¹¹⁾¹²⁾.
- 서울시는 지난 '21년 1차 년도 사업(44억 7500만원) 이후, 매년 투입 예산 규모를 확대하고 있음. 그러나 투입되는 ‘비용 대비 편익’에 대한 효과성은 아직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현재 만족도 조사만 실시하고 있는 상황임(다음 페이지 참조).
- 이번 추경안이 통과될 경우, 동 사업에 투입되는 누적 사업비는 총 738억원임. 서울시의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는 만큼,

10) 자료 : 서울특별시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회의록(2022년 11월 14일(월))

- 위원 : 이 사업이 장기적으로 예방적 건강관리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 주장을 입증하려면 타당성을 증명해내야 합니다.
- 위원 : 신체활동량 증가가 시민의 건강에 도움이 될 거라는 주장에 여기 반박하는 분 없을 것입니다. 다만, 지금 이러한 상황에 미친 것에는 저는 집행부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예산을 사용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의 경제적인 효과, 비용편익에 대해서 시민과 시의회를 설득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계속 비용편익 부분에 대해서 1차 시범사업 결과를 확인하시고 그 결과를 토대로 2차 사업 시행하시라 주장하였는데 방금 직전까지 본 위원은 한 번도 집행부의 명확한 비용편익에 대한 설득 주장을 듣지 못했습니다.

11) 자료 : 서울특별시의회 제311회 임시회 회의록(2022년 7월 22일(금))

- 위원 : 실제 일반시민들이 얼마큼 효과를 봤는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이 참여해서 자기 건강증진에 도움이 된다면 충분히 괜찮은 사업이라고 보고 있는데 진행 과정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부분에서 보는 시각이라든지 그런 내용하고, 두 번째는 지금 1차년도도 제대로 어떤 평가나 그런 내용도 없는데 2차년도를 너무 무리하게 해서

12) 자료 : 서울특별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회의록(2024년 2월 26일(월))

- 위원 : 정말 이 손목닥터 9988 사업으로 인해서 건강보험료가 절감이 되는지에 대한 효과성은 나중에 한번 입증 이 돼야 될 사업인 것 같고요.

단순 '가입자의 수'와 '만족도 조사 결과'가 아닌 '효과성'과 '비용-편익'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손목닥터 9988 사업의 확산 필요성을 입증하고 이를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손목닥터 9988 연차별 모집인원 및 예산, 효과성 평가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1년(1차)	'22년(2차)	'23년(3차)	'24년	추경요청	합 계(누적)
모집 대상	19~64세	19~69세	19~75세	19세 이상	19세 이상	-
신규 모집 목표(누적)	5만명	18만명 (23만명)	22만명 (45만명)	(당초 목표) 25만명 (60만명) ↓ '(24.6월 현재) 53만명 (98만명)	'(24.12월 말) 108만명 (153만명)	153만명
예산(시비 100%)	4,475	12,855	27,018	18,198	11,305	73,851
효과성 평가	○*	x	x			
만족도 평가	○	○	진행 중			

* 서울형 스마트 헬스케어 시범사업 평가분석 용역(수행기관: 성균관대학교. '22.6.~'22.10.)
 (신체활동개선) 신체활동의 수준이 사업참여 후 개선되었음. 신체활동수준(저, 중, 고)이 각각 높은 단계로 개선된 인원이 36.4%, 각 단계에서 유지한 인원이 21.6%
 (걸음수변화) 첫달로부터 10% 이상 걸음수 증가 경험대상자 45.2%
 (몸무게변화) 첫달 몸무게로부터 5% 이상 체중감소 경험자는 12.4%

- 마지막으로 올해 개편된 참여자 모집 방식(19세 이상 시민 연중 상시 모집)으로 인해 매년 신규 가입자의 규모를 예측하기가 어려워짐. 이에 매년 이번 추경안과 같이 초과된 신규참여자의 인센티브 지급 예산 확보를 위해, 연례적으로 추경안이 제출될 우려가 있어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2.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사업별설명서 p.848>

가. 현황

-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은 이전에 영구피임 시술(정관·난관 절제술)을 받은 자가 다시 임신을 희망하여 정·난관 복원 수술을 받게 될 경우, 서울시가 본인부담금을 최대 100만원 지원해 주는 신규사업임.

< 영구피임 수술 >

구 분	정관 절제술	난관 절제술
이미지		
방법	◦ 고환에서 생성된 정자가 이동하는 관을 자르고, 양 끝에 매듭을 묶어 정자가 이동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수술	◦ 나팔관의 일부를 절제, 봉합, 전기소작 등으로 난자의 이동을 막는 수술

< 정·난관 복원 수술 >

구 분	정관 복원 수술	난관 복원 수술
이미지	 <정관정관문합술> <부고환정관문합술>	
방법	◦ 안쪽의 점막과 바깥쪽의 근육층을 각각 연결	◦ 난관의 막힌 부분을 잘라내고 이어줌
종류	◦ 정관정관문합술(R3893) ◦ 부고환정관문합술(R3894) ◦ 정관복원술(양측)(R3895)	◦ 난관난관문합술(R4411) ◦ 자궁난관이식술(R4412)
본인부담금비용	◦ 40~80만원 ※ 23년 종합병원 일반환자 기준 약 74만원	◦ 200~300만원
수술	◦ 임신을 위해 자른 정관을 연결하고자 할 경우	◦ 난관 수술한 사람이 임신을 원할 경우 ◦ 난관이 기형으로 막힌 경우 ◦ 난관 주위 복강에 유착 증상이 있는 경우

- 서울시는 저출생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이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사업으로 1억 150만원을 편성하여 제출함.

<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

(단위: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101,500	0	101,500
사무관리비	1,500	0	1,50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00,000	0	100,000

나. 분석의견

첫째, 서울시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이미 영구피임 수술을 받았으나 다시 임신과 출산을 하고 싶어하는 시민에게 정·난관 복원 시술비를 지원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함. 단,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대상자 선정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2023년 서울특별시의 합계출산율은 0.55명으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임¹³⁾.

이에 이미 영구피임 수술을 받았으나 다시 임신과 출산을 하고 싶어하는 시민에게 정·난관 복원 시술비를 지원하여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임신을 지원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함.

13) 자료 : 서울특별시(2023. 4.)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요청서(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사업)

- 단,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대상자 선정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대상 >

● 대상자 선정기준

- (거 주 지) 서울시에 거주하는 정·난관 복원 수술을 받은 사람
- (혼인여부) 기혼, 미혼 구분 없음
- (지원인원) 연 100명

※ [참고]정·난관 복원 시술 건수 14)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6월
정관 복원	전 국	707	652	634	319
	서울시	121	118	98	46
난관 복원	전 국	77	59	49	19
	서울시	0	6	1	2

☞ (정관복원술) R3893 정관수술[양측]-정관정관문합술, R3894 정관수술[양측]-부고환정관문합술, R3895 정관복원술(양측), (난관복원술) R4411 난관난관문합술, R4412 자궁난관이식술

* 자료: 서울특별시(2023. 4.)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요청서(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사업)

- (정관 복원 수술의 임신 성공 가능성) 구체적으로 ① 정관 복원 수술은 정관수술 후 3년 이내 수술해야 임신 성공률이 높고 시간이 지날수록 임신 성공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¹⁵⁾.

즉 정관 복원 수술을 시행하더라도 다 임신에 성공하는 것은 아니며, 이전에 정관 수술을 받은 시기에 따라 임신 성공률이 달라 지므로 임신 성공률을 고려하여, 정관 수술 지원대상 기준(정관

14)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15) 자료 : 서울특별시(2023. 4.)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요청서(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사업)

수술 기간 :예 3년 이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 정관 복원 수술의 임신 성공 가능성 >

정관 수술 기간	정관 개통률(%)	임신 성공률
3년 이하	97%	76%
3~8년	88%	53%
9~14년	79%	44%
15년 이상	71%	30%

* 자료: 서울특별시(2023. 4.)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요청서(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사업)

- (소득 기준 및 혼인 여부) 또한 서울시는 이번 추경안에 대하여 “서민 경제의 부담을 덜고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위한 편성¹⁶⁾이라고 밝힌 만큼.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대상자 선정에 있어, 특히 비용 부담이 큰 저소득층을 우선 지원할 필요가 있겠음¹⁷⁾. 또한 아직 결혼하지 않은 미혼자보다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기혼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커 보임.

16) 자료: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과, 2024.05.27., “서울시 올해 첫 추경 1조 5,110억원 편성… 민생경제 회복·취약계층 지원 전력”, 서울시 보도자료

<https://opengov.seoul.go.kr/press/31026572>

17) (비용 부담) 2004. 7월부터 정관 및 난관의 복원 시술도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되어 본인부담금은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40~300만원 비용은 개인이 부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36호(행위) 영구피임 시술(난관·정관 절제술 또는 결찰술)을 받은 자가 자녀를 낳고자 하여 실시하는 정·난관 복원 수술은 요양급여 대상임. (2004. 7. 1 시행)

둘째,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 일정 및 홍보 방안 등을 점검하여 연내집행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서울시는 이번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을 위해 1억 150만을 편성하여 제출함. 이는 서울시의 연평균 정·난관 복원 시술 건수를 감안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 이번 추경안 예산 집행 가능 시점(통과될 경우 7월 초 이후)을 고려할 때, 연내 집행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불용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함. 따라서 향후 서울시의 추진계획 일정 및 홍보 방안 등을 철저히 점검하여 연내집행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적정성 등 >

● 대상자 선정기준

- (거 주 지) 서울시에 거주하는 정·난관 복원 수술을 받은 사람
- (혼인여부) 기혼, 미혼 구분 없음
- (지원인원) 연 100명

※ [참고] 정·난관 복원 시술 건수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6월
정관 복원	전 국	707	652	634	319
	서울시	121	118	98	46
난관 복원	전 국	77	59	49	19
	서울시	0	6	1	2

* 자료: 서울특별시(2023. 4.)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요청서(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사업)

- 참고로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사업은 성동구와 서초구가 먼저 시행하였으나, 이들 자치구는 지원 대상이 없어 현재 사업이 종료¹⁸⁾¹⁹⁾된 것으로 확인됨.

셋째, ‘사전집중심의’가 아닌 ‘목록심의대체’로 이루어진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사업의 ‘지방보조금 심의’는 ‘서울시 내부계획’이 아닌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전집중심의’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사업은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제2호에 근거하여 ‘시비 100%’로 ‘자치구’에 ‘경상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신규사업’임.
- 따라서, 동 사업은 ‘지방보조금’ 관련 ‘신규사업’이라는 점에서 그 사업의 타당성을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과 조례, 예규 등을 기준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 현행 「지방보조금법」 제26조,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1조,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예규)」 제27조 및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24.4월)」 P.29 에 따르면,

18) 자료 : 서울특별시(2023. 4.)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요청서(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사업)
(타 기초 지차체 폐지) 성동구(‘20년 사업종료), 서초구는 지원 대상이 없어 현재 사업 종료.

19) 자료 : 서울특별시(2024) 서울시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사업 안내(업무 매뉴얼)
(타 시·도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사례) 광진구 ‘24년 사업종료

- ‘서울특별시장’은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사전심의(집중심의)’를 원칙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음. 그리고 예외적으로 ‘목록에 의한 심의대체(일괄심의)²⁰⁾’를 다음과 같이 2가지 ‘요건’하에서 할 수 있게 명시하고 있음.

〈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24.4월) 〉 P.29 〉

- 심의방법 : 집중심의 대상과 일괄심의 대상을 구분, 집중심의대상 사업위주의 사전심사
 - ① 집중심의 대상 : 신규 사업, 당초 예산대비 30% 초과 증액사업, 2억원 이상 민간보조 공모사업 중 증액사업, 관리부실 및 부적정 집행 관련 사업*
 - * 국회·감사원 등 외부기관 감사 또는 자체감사 등에서 부적정 집행이 지적된 사업
 - ② 목록에 의한 심의 대체 가능 사업(일괄심의) : 법령에 근거한 연례반복사업, 당초 예산(직전예산 또는 본예산) 대비 30% 이하 증액사업

- 그런데, 동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사업은 ‘24년 신규 보조금 사업’임에 따라 ‘목록심의대체(일괄심의)’ 요건 (법령에 근거한 연례반복사업 또는 당초 예산(직전예산 또는 본예산) 대비 30% 이하 증액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 왜냐하면 ‘조례’에 근거한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사업’ 일 수가 없고 이에 더해 ‘신규사업’은 ‘당초예산’ 자체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임.

- 따라서, 동 사업은 ‘보조금 관리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목록심의대체 (일괄심의)’가 아니라 ‘사전심의(집중심의)’를 받아야 했음.

20) 「지방보조금법」,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예규)」상 공식적인 법적용어는 ‘사전심의’와 ‘목록에 의한 심의대체’이며, ‘집중심의’와 ‘일괄심의’라는 용어는 동 내용을 반영한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상의 용어임. (예시) '23년 제8차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회의록 中 "서울시제정담당관 曰 : "일괄심의의 경우 목록에 의한 심의로 진행을 하는데 ~ (이하 "생략")"

- 그러나, 동 사업은 실제 ‘추가경정예산 보조관리위원회’ 심의 과정²¹⁾에서 ‘목록심의대체(일괄심의)’로 분류되어 ‘담당 사업부서의 팀·과장의 설명’과 이에 대한 ‘전문가’ 위원들의 ‘집중적인 질의와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다른 27개의 ‘목록심의대체’ 안건과 함께 일괄 통과되었음.
- 그리고 ‘신규 지방보조금 사업’인 동 사업이 ‘집중심의’가 아닌 ‘목록심의대체(일괄심사)’ 대상으로 분류된 이유는 ‘서울특별시 내부의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계획’²²⁾의 분류에 근거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됨.

〈서울특별시 내부의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계획 中 발췌〉

- 심의방법 : 집중/일괄 심의로 구분하여 적정/조건부적정/부적정 결정
 - 집중심의 대상사업은 사업부서 설명 및 질의응답 후 위원회 논의를 거쳐 의견 결정, 일괄심의 대상은 목록에 의한 심의로 대체

집중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액시비 민간보조사업 중 신규사업, 본예산 대비 30% 초과 증액사업 ▪ 2억원 이상 민간보조 공모사업 중 증액사업 ▪ 관리부실·부적정집행 관련 사업* * 국회·감사원 등 외부기관 감사, 市 자체감사, 자체조사에서 부적정 집행이 지적된 사업
일괄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액시비 민간보조사업 중 30% 이하 증액사업 ▪ 공공단체보조사업, 시민참여예산, 법령에 근거한 연례반복, 행사성 사업 ▪ 국비보조(매칭)사업 중 의무부담비율 외 자체시비 포함 사업

21) '24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회의록 참조 (2024-05-13 (월) 14:00)
https://opengov.seoul.go.kr/proceeding/list?sortBy=date&sortOrder=desc&items_per_page=15&srchField=&shKwrld=%EC%A7%80%EB%B0%A9%EB%B3%B4%EC%A1%B0%EA%B8%88&shCommitteeld=&shCommitteeldChkAll=&srchDateRange=&startDate=&endDate=

22) '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등 사전심의를 위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 계획(재정담당관-5686, 2024.05.13.)

- 즉, 동 계획에서는 ‘지방보조금’ 관련 ‘일괄심의’ 대상을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1조,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예규)」 제27조 및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24.4월)」 P.29”에서 명시한 “요건 2가지” 보다 더 세부화 하였음.
- 그리고 이에 동 사업은 동 계획 상의 ‘일괄심의’ 기준에 따라 ‘공공단체 보조사업’으로 분류되어 ‘일괄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첫째 동 계획은 그 법적 성질상 조직 내부의 효율적인 업무 처리 방식을 정한 내부 방침으로 보임. 따라서, 동 계획보다는 서울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고 법규성이 있는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가 더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고 사료됨.
- 이에 더해, 동 계획은 ‘지방보조금’ 유관 ‘상위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예규)」와도 기준이 상이하고, 오히려 행안부 예규는 동 서울시 조례와 그 내용과 기준이 같음.
- 둘째, 동 계획(’24.5월)은 그 법적 성질상 조직 내부의 효율적인 업무처리 방식을 정하기 위해 수립된 것으로 보이는데, 같은 목적으로 ’24년 4월에 먼저 만들어진 서울시의 내부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24.4월)」과 그 내용이 상이함.

- 셋째, 동 계획은 그 자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측면이 존재한다고 사료됨. 예를 들어, 소관실국, 사업명, 예산과목, 재원분담방식, 사업성격 등이 모두 동일한 아래의 사업에 대해서 그 보조금 심의 방식을 다르게 했기 때문임.

〈'24년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발취〉

소관 실국	사업명	예산과목	재원 분담	사업 성격	사회보장 협의여부	지방보조금 심의 방식
시민건강국 스마트건강과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자치단체 경상보조	시비 (100%)	신규	적정	집중심의
시민건강국 스마트건강과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	시비 (100%)	신규	적정	일괄심의

- 넷째, ‘지방보조금 제도의 적정하고 투명한 집행과 관리’를 위해 제정된 「지방보조금」 관련 법, 조례 및 예규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업의 효과성 및 타당성’ 등이 아직 검증되지 않은 ‘신규 지방 보조금 사업’의 경우는 ‘집중심의’를 통해 ‘사전 심사’를 철저히 하는 것이 그 취지에 부합한다고 사료됨.
- 또한, ‘자치단체 경상보조’ 사업 역시 그 사업 집행구조상 “서울특별시 -> 자치구 -> 민간”으로 보조금이 교부되기 때문에 굳이 서울시 조례, 행안부 예규 등과 다르게 세분화하여 ‘민간보조 신규사업’와 ‘공공단체 보조 신규사업’을 다른 기준으로 심의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사료됨.

3)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운영보조 및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위탁운영
<사업별설명서 p.908 및 p.912>

① 사업개요

-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운영보조 사업’은 「지방의료원법」에 근거해 설립된 ‘서울의료원’에 대해 서울특별시가 「지방의료원법」 제17조 제2항에 근거해 ‘지방의료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는 ‘지방보조금 지원(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사업임.
- 그리고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위탁운영 사업’은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립병원’으로 ‘민간위탁 운영’되고 있는 ‘보라매병원’에 대해 서울특별시가 동 조례 제 13조 및 「민간위탁 협약서」 제12조에 의거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하는 ‘민간위탁금 지원’ 사업임.
- ‘동 사업 예산들’은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인해 동 병원들의 “병상 가동률 및 진료실적이 저하”되고 이에 연동해 “병원 재정 여건이 현저히 악화”됨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되었음.
- 구체적으로는, “서울의료원 운영보조 예산”은 기정예산 약 162억원에 더해 약 226억원을 추가적으로 편성하였고, 이와 더불어 “보라매병원 위탁운영 예산”은 기정예산 약 139억원에 더해 약 112억원을 추가적으로 편성하였음.

-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추경 사유 및 산출내역
계	38,925,681	16,283,681	22,642,000	
민간경상사업 보조	1,645,599	1,645,599	0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 조	37,280,082	14,638,082	22,642,000	○의사집단행동 장기화로 병상가동을 하락 등 재정위기가 예상되는 시립병원 지원을 통해 공공의료 기능유지 -병원 자구노력을 전제로 손실보전 = 22,642백만원

-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추경 사유 및 산출내역
계	25,109,554	13,909,554	11,200,000	
민간위탁금	20,609,154	9,409,154	11,200,000	○의사집단행동 장기화로 병상가동을 하락 등 재정위기가 예상되는 시립병원 지원을 통해 공공의료 기능유지 -병원 자구노력을 전제로 손실보전 = 11,200백만원
민간위탁사업 비	4,500,400	4,500,400	0	

② 분석의견

가. 예산 편성 및 지원 관련 법리적 검토

- ‘서울의료원 운영보조 사업’은 「지방보조금법」 등의 ‘지방 보조금 관련’ 규율을 받는 ‘사업’임. 이에 반해, ‘보라매병원 위탁운영 사업’은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율을 받는 ‘민간위탁금 지원’ 사업임.

- 따라서, ‘서울의료원 운영 보조 사업’의 ‘예산 편성’에 대한 타당성은 ‘지방보조금’ 관련 규정 기준으로, ‘보라매병원 위탁운영 사업’의 ‘예산 편성’에 대한 타당성은 ‘민간위탁’ 관련 규정을 통해 별도로 나누어 검토할 필요성이 존재함.
 - 첫째, ‘서울의료원 운영 보조 사업’은 「지방보조금법」 제2조제1호에 근거해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사업에 해당함.
 - 따라서, 동 사업의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은 ‘지방보조금 지원 관련 대상과 한계 등’을 명시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17조를 준수해야함. 그리고 이와 더불어 동 사업은 특히 ‘운영비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지방보조금법」 제6조제2항 역시 준수 해야함.
 - 그리고 이에 따라 동 사업의 ‘예산 편성’ 근거를 검토해보면, 동 사업은 ‘공공보건의료기관²³⁾의 설립·운영’ 사무에 관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²⁴⁾에 따라 ‘자치사무’임. 그리고 ‘법률’인 「지방의료원법」 제17조 제2항에 ‘명시적’으로 ‘지방보조금 운영비 지원’ 근거가 존재함.

23) 공공보건의료법 제2조 3호 (공공보건의료기관)

24)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2호마목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 따라서, '법률'에 '운영비 보조금 지원' 근거가 명시적으로 있다는 점에서 또 그 보조금 대상사무가 지자체 소관 '자치사무'라는 점에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 요건에 부합하다고 사료됨. 그리고 '법률'에 근거가 명시적으로 있어 「지방보조금법」 제6조2항에 저촉되지 않음. 따라서, '운영비'까지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됨.

<p>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p> <p>① 지방자치단체는 <u>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u></p> <p>1. <u>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u></p>
<p>지방보조금법 제6조(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 및 운영)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u>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u> (이하 “생략”)</p>
<p>지방의료원법 제17조(보조금 등) ② 지방자치단체는 <u>지방의료원의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出捐)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u> (이하 “생략”)</p>

- 둘째, '보라매병원 위탁운영 사업'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및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민간' '의료법인'에 '위탁'하여 운영되는 사업임.
- 따라서, 동 사업의 '민간위탁금 지원 예산편성'은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그리고 「민간위탁 협약서」에 근거하여 판단이 필요함.

- 그리고 이에 따라 동 사업의 ‘예산편성’ 근거를 검토해보면, 동 사업은 ‘자치사무’인 ‘공공보건의료기관²⁵⁾의 설립·운영’ 사무를 ‘서울특별시 시립병원 조례’ 제10조에 의거 ‘민간’에 위탁한 사업임.
- 그리고 이러한 ‘민간위탁’에 따라 동 조례 제13조의 ‘준용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수탁 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장이” “위탁사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 이와 더불어 「민간위탁협약서」 제12(사업비 지급 및 집행)에서도 “서울시”가 “수탁법인”에게 “병원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되어 있음.

<p>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관리·운영의 위탁)</p> <p>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병원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이하 “생략”)</p> <p>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할 수 있는 병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이하 “생략”)</p>
<p>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준용)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사항 이외에 병원의 관리·운영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관련된 규정을 준용한다. (이하 “생략”)</p>
<p>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3조(운영지원)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p>

25) 공공보건의료법 제2조 3호 (공공보건의료기관)

- 따라서, ‘서울의료원 운영비 지원’ 및 ‘보라매병원 민간위탁금 지원’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각각 보조금 및 민간위탁 관련 법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판단됨.
- 그리고 이에 더해,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의 명문 규정’이 ‘임의규정’이고 ‘지원사업의 수익적 성격’을 고려할 때, ‘동 보조금 지원 및 민간 위탁금 지원사업’은 ‘서울특별시’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판단됨.²⁶⁾
- 아울러 지원의 대상인 ‘서울의료원 법인’과 ‘보라매병원 수탁법인’은 현재 ‘의사 집단행동 및 이로 인한 극심한 경영난 발생’에 있어 ‘법인’ 그 자체의 ‘귀책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따라서, 동 법인들에 대한 ‘시장’의 추가적인 예산 지원이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이라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 더욱이 그 지원의 궁극적인 목적 및 사유가 현 ‘보건의료 심각단계’ 상황에서 ‘공공병원의 공공의료 체계 유지’를 통한 ‘시민들의 생명권 보장’임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고 판단됨.²⁷⁾

26) 보조금 교부는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교부대상의 선정과 취소, 그 기준과 범위 등에 관하여 행정청에 상당히 폭넓은 재량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두56193 판결 참조)

27) 행정청이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기준을 설정한 경우 그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하고, 그 기준의 해석·적용에 관해서도 문언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객관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준을 마련한 행정청의 해석이 존중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7두43319 판결 참조).

나. 예산 편성 및 지원 관련 정책적 검토

- ‘서울의료원’ 및 ‘보라매병원’의 ‘병상가동률’은 ‘22년 5월 코로나19 감염병전담 병원 해제 이후 ‘22년 회복기를 거쳐 ‘23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꾸준히 상승 추세에 있었음.

〈 의사 집단 행동 전·후 병상가동률 현황²⁸⁾ 〉

	(‘22. 5월 코로나 전담병원 해제 후) < ‘22.5월 ~ ‘22. 12월 >	<‘23.1월 ~ ‘24. 2월>	(‘24. 2. 20. 의사 집단행동 후) '24. 3월 ~ '24월 4월
(서울의료원) 병상가동률 평균	약 49.6%	약 64%	약 46.3%
(보라매병원) 병상가동률 평균	약 66%	약 74%	약 50.3%

- 그러나, ‘24. 2. 1. ‘보건복지부’의 ‘의료인력 확충’을 포함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발표²⁹⁾ 이후 ‘24. 2. 20.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본격화 됨에 따라, ‘동 병원’들의 ‘병상 가동률’이 코로나 회복기인 ‘22년 보다 더 감소하게 되었음.
- 그리고 이러한 ‘병상가동률’ 감소와 연동되어 ‘병원의 경영 손실’ 역시 현저히 확대되어 ‘24. 6월 현재 ‘서울특별시’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동 병원들에 대해 긴급히 재정 지원을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그 액수는 총 338억원임 (서울의료원 약226억, 보라매병원 약112억). 그리고 이는 시민건강국의 다른 추가경정예산 편성 사업 대비 그 예산 편성 액수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큰 편에 속함.

28) 출처: 서울의료원 및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시의회 제출 자료 재편집

29) “벼랑 끝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살린다” (‘24. 2. 1.) (보건복지부)

- 따라서, 앞서 검토한 ‘예산 지원’의 ‘법적 가능 여부’ 검토 이외에도 동 병원들에 대한 총 338억원 ‘예산 지원’의 ‘정책적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첫째,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공익적 가치와 그에 따른 보상과 지원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서울의료원’과 ‘보라매병원’은 서울시 산하 ‘지방의료원’ 및 ‘서울시립병원’으로서, 「공공보건의료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임. 그리고 이에 따라 동 병원들은 ‘민간병원’과는 달리 「공공보건의료법」 제7조 등에 따라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보건의료, 재난 및 감염병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공공보건의료’ 등을 ‘우선적’으로 제공해야하는 의무를 수행하고 있음.

공공보건의료법제7조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 ① 공공보건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건의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 의료급여환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2. 아동과 모성, 장애인, 정신질환, 응급진료 등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보건의료
3. 재난 및 감염병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공공보건의료
4.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에 관련된 보건의료
5. 교육·훈련 및 인력 지원을 통한 지역적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보건의료
6. 그 밖에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건의료

- 그리고 특히 동 병원들은 ‘코로나19 감염병 발병’으로 인한 ‘전 국가적 보건 의료 위기’가 도래했을 당시 ‘코로나 전담병원’으로서의 의무를 수행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병상 확보 및 환자치료에 전념하였음.
-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동 병원들의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공익적 가치와 의의’는 충분하다고 판단됨. 그리고 이에 더해 ‘공공보건의료’의 ‘공익적 성격’과 ‘비수익적 성격’ 그리고 이로 인한 ‘민간 의료기관을 통한 공급 부족’을 고려할 때, 동 예산 지원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사료됨.
- 아울러, ‘의무와 헌신’ 그리고 이에 대한 ‘지원과 보상’의 ‘균형’은 ‘지속 가능한 공공보건의료체계’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는 점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 둘째, ‘예산투입의 기회비용과 공익 간의 이익형량’ 그리고 ‘정책의 적시성’ 측면에서 ‘동 예산 편성’을 검토할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사료됨.
- 모든 예산투입은 ‘자원(예산)의 희소성’으로 인해 ‘기회비용’ 문제가 발생함. 따라서, 특정 사업에 대한 예산 투입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기회비용’과 그 예산 투입으로 인한 ‘효과’ 또는 ‘이익’을 비교하여 그 ‘효과 또는 이익’이 더 우월해야 한다고 사료됨.
- 그런데, 동 사업의 경우는 ‘서울시의 추가적인 재정 투입으로 인해 다른 사업 예산으로 활용될 수 있었던 동 예산의 ‘기회비용’ 대비 ‘시민들의 생명권 및 진료권 보장’이라는 공적인 이익이 더 우월하다고 판단됨.

- 한편, '정책의 적시성' 측면에서 '동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검토해 보았을 때 현 시점에서의 지원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사료됨. 왜냐하면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동 공공병원의 경영난의 근본적인 원인과 그 귀책 사유의 궁극적인 귀속 주체'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공공보건의료 시스템 유지' 그리고 이를 통한 '시민들의 생명권 및 진료권'의 보장이라 판단되기 때문임.
- 다시 말해, '현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과 귀책 사유'에 대한 '법적·정책적 평가' 등은 '동 공공병원의 정상화' 이후에도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사료됨.
- 이에 반해 '시민들 (특히, 중증질환자)의 생명권과 진료권' 보장은 현 시점에서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 '비가역적' 성격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생명권 또는 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음.
- 셋째, '동 병원들의 자구노력' 담보와 '예산 지원'의 '전제 조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 예산 지원은 '공공보건의료의 가치' 그리고 시민들의 '생명권 및 진료권 보호'라는 공익적 성격으로 인해 그 타당성이 있음. 아울러 법적으로도 그 '명문 규정' 및 '사업의 수익적 성격'으로 인해 '서울특별시'에게 많은 '재량권'이 있다고 사료됨.

- 하지만, 이러한 ‘지원’의 법적·정책적 타당성과 별개로 동 사업은 약 338억원 이라는 많은 시민들의 세금이 추가적으로 투입되는 만큼 그 ‘집행’ 과정에서 당초 ‘추가경정예산편성 및 지원’의 ‘궁극적인 목적 달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여러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우선, 집행기관은 무엇보다 동 예산 편성의 궁극적인 목적은 ‘시민들의 건강권 및 진료권 보장’에 있음을 분명히 해야함. 따라서, 동 추가 경정 예산 ‘투입 전 시점’ 보다 ‘투입 후 시점’에서의 ‘시민들의 건강권 및 진료권’ 보장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해야함.
- 예를 들면, ‘보조금 및 민간위탁금 지원’은 그 성질상 ‘수익적 성격’의 ‘재량적 ‘행정행위’³⁰⁾인 만큼 ‘부관’을 붙이는 방식 등을 통해 ‘목적’ 달성을 담보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음. 즉, 집행기관은 동 예산 ‘집행’의 궁극적인 ‘목적’인 ‘시민들의 건강권 및 진료권 보장’을 ‘실질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조치에 대한 ‘사전 검토’를 반드시 선행 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 그리고 동 병원들 역시 ‘병원 정상화’를 위한 예산 절감 등의 자구 노력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그리고 예산의 집행 과정에서 ‘동 예산지원’의 ‘목적과 취지’가 ‘시민들의 건강권 및 진료권 보장’에 있는 만큼 ‘시민들의 진료’와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사업’에 ‘동 예산’이 우선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30) 개발행위의 허가는 상대방에게 수익적인 것이 틀림이 없으므로 그 법률적 성질은 재량행위 내지 자유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이고, 이러한 재량행위에 있어서는 관계 법령에 명시적인 금지규정이 없는 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조건이나 기한, 부담 등의 부관을 붙일 수 있고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두12837 판결)

- 나아가 '병원' 차원에서도 현재의 '갈등' 해결을 위한 '협상 및 대화' 등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 동 '상황'이 현재와 같이 유지되거나 혹은 더욱 악화된다면 '병원의 경영 위기' 문제가 이와 유사한 형태로 또는 더 악화된 형태로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임.